



## 수전설비에 따른 이격거리

관련조항 : 판단기준 제44조

**Q**

○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 개설로 인한 수전설비 이격거리로 어떤 기준을 써야 하는 것인지?

〈개요〉 연장 860m, 도로폭 12m(2차로)

〈현황〉 1.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SKC의 수전설비(154kV)시설 근접통과(도로와 수전설비와의 이격거리가 4.9m에서 1.9로 축소)  
2. 기존 수전설비 옆 담장 저축

〈질의내용〉 판단기준 제44조와 제127조에 관한 내용

- 제44조는 도로개설시 담장의 높이를 4.1m 이상 계획하여 줄어든 이격거리를 기준에 맞게 계획할 수 있는 내용  
4.1m(담장높이) + 1.9m(이격거리) = 6.0m(기준만족)
- 제127조는 도로개설 시 수전설비에서 도로까지의 이격거리(3m + 1.8m = 4.8m)만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
- 도로개설에 따른 SKC 수전설비(154kV)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판단은?

**A**

- 판단기준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기,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변전소에서 구내 취급자 이외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출입금지 표시 및 기타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는 기준입니다.
- 울타리·담 등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부분이 사람과 가축 등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와 충전부까지의 거리는 판단기준 제44조 표 44-1에 따라 6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 발·변전소의 송전선 인출점으로부터 발·변전소 외부로 시설한 송전선은 가공 송전선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154kV 가공 송전선과 도로의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 제127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